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26. 09. 21.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의결 요청 사항 :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2. 주요내용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다. 출연목적

- 지방세연구 강화,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
-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

라. 출연금 및 산출내역

- 출 연 금 : 35,448천원
- 산출내역 :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354,477,188천원)의 1만분의 1.0

※ 산출근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마. 우리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최근5년)

(단위:천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35,067	40,369	42,110	38,924	33,461

바. 출연 추진일정

- 2026. 9월 : 출연 의회 의결 요청
- 2026. 10월 : 구의회 의결

3. 관련규정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

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